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21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안상훈·김성원·김선교

이성권 · 서천호 · 유용원

박덕흠 • 박준태 • 김예지

백종헌 · 최보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자담배 등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포함되지 않게 됨. 그 결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을 통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및 제64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는 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성인인증장치가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전자식별방식을 통하여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인식하고 그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이하"신분증확인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28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신분증확인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64조제1항 중 "제7호의2"를 "제7호의2·제7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	4
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	
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	
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	
(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담배사업법」에 따른	2) 「지방세법」에 따른
<u>담배</u>	<u>담배</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대여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	

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 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 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 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 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 소는 제외한다.

- 1. (생략)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소매업의 영업자
- 3. (생략)
- ⑥ ~ ⑩ (생 략)

<신 설>

 		_	_	$\overline{}$	-	-	-	-	-	-	-	-	$\overline{}$	-	-	$\overline{}$	$\overline{}$	-	$\overline{}$	$\overline{}$	-	_
 	_	_	_	$\overline{}$	_	_	_	_	_	$\overline{}$	_											
 		_																		_		
 	_	_	_	$\overline{}$	_	_	_	_	_	$\overline{}$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								

- 1. (현행과 같음)
- 2.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3. (현행과 같음)
- ⑥ ~ ⑩ (현행과 같음)
- 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 치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ㆍ 대여ㆍ배포하는 자(「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 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 당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 매장치에 전자식별방식을 통하 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 나 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인식하고 그 신분증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1. ~ 7의2. (생 략) <u><신 설></u>

- 8. (생략)
- ② (생 략)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 1호·제2호·제7호·<u>제7호의2</u> ·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의 진위 및 본인 여부를 감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치(이하 "신분
증확인장치"라 한다)를 부착하
<u> 여야 한다.</u>
제45조(시정명령) ①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28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신분증확인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u>제7호의2·</u>
제7호의3
② · ③ (현행과 같음)